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4.7.(수)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4

상담 내용

법정 교육 중 '청렴 교육'의 이수 조건 문의

상담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함.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제2항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의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범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출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월 7일

행동강령책임관

김용덕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4.12.(월)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	---------------	------	---

상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

상담 내용

공사 임직원의 청렴교육(부패방지교육) 필수 이수시간 문의

상담 결과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의, 시청 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자나 승진자의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의 경우에는 대면 또는 대면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별도 이수하여야 함.

|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출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신규채용자		승진자	
	임원	직원	승진직급 3급 이상	승진직급 4급 이하
시기	<u>채용일로부터 3월 이내</u>		<u>승진일로부터 3월 이내</u>	
시간	<u>대면교육 또는 대면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 2시간 이상</u>			

<출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월 12일

행동강령책임관

김용덕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4.15.(목)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	---------------	------	---

상 담 요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

상담 내용

공사 임직원의 청렴교육(부패방지교육) 필수 이수 방법 문의

상담 결과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자나 승진자의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의 경우에는 대면 또는 대면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별도 이수하여야 함.

|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출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신규채용자		승진자	
	임원	직원	승진직급 3급 이상	승진직급 4급 이하
시기	<u>채용일로부터 3월 이내</u>		<u>승진일로부터 3월 이내</u>	
시간	<u>대면교육 또는 대면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 2시간 이상</u>			

<출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월 15일

행동강령책임관

김용덕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4.19.(월)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상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

상담 내용

청렴교육(부패방지교육) 필수 이수시간 문의

상담 결과

-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자나 승진자의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규 채용자 및 승진자의 경우에 대면 또는 대면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별도 이수하여야 함.

|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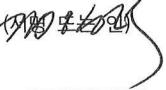
<출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신규채용자		승진자	
	임원	직원	승진직급 3급 이상	승진직급 4급 이하
시기	채용일로부터 3월 이내		승진일로부터 3월 이내	
시간	대면교육 또는 대면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 2시간 이상			

<출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월 14일

행동강령책임관

김용덕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4.23.(금)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메신저)
상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

상담 내용

승진자의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시기 문의

상담 결과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의2(별표4)에 따라 승진자의 경우 대면 또는 대면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승진일로부터 3월 이내에 2시간 이상, 1회 이수하여야 함.

구분	신규채용자		승진자	
	일원	직원	승진직급 3급 이상	승진직급 4급 이하
시기	채용일로부터 3월 이내		승진일로부터 3월 이내	
시간	대면교육 또는 대면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 2시간 이상			

<출처 :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4>

2020년 4월 23일

행동강령책임관

김용덕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5.3.(월)	상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
상담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의 따라 외부강의등을 수행하였는데, 사례금 지급은 별도 용역사에서 지급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		
상담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함.또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의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수행한 것으로 외부강의등의 신고 예외 대상으로 보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p>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판단기준(요청기관과 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p><p>게시자 최** 게시일 2020-10-15 조회수 192</p><p>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요청기관과 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청탁금지법을 상 규제하는 상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저 판단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들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나,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전신고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부터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 제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강의 후 지금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 2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Q1 : 청탁금지법 상에는 '요청한 자'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소속기관에 신고 시 요청한 자 기준으로 사전신고 제외기관 기준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요? Q2 : 요청기관은 사전신고 제외 해당 기관에 속하나 강의로 사례금 지급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p><p>이전글 외부강의신고대상 문의</p><p>다음글 자자체 기탁 관련 「정당한 권리」의 요건 질의</p><p style="text-align: right;">☰ 목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삭제</p><p style="text-align: right;">2020-10-30</p><p>청탁금지제도과</p><p>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p><p>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영세 등을 소속기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리하지 아니합니다.</p><p>-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삽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p><p>나.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의 연관성·일관성 및 법적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으로 풀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p><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음</p><p>*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div>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

2021년 5월 3일

김용덕 

행동강령책임관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6.21.(월)	상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상 담 요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

상담 내용

공모전 운영에 따른 우수자에게 포상으로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 문의

상담 결과

공모전 결과에 따라 우수자를 포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예외 조항인 제8조제3항제7호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개인도에 300만원을 초과
②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가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들이나 피언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들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외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재무의 이행 등 경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2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들과 관련된 직원상조회·종호인회·동창회·항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체계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년 6월 21일

행동강령책임관

김용덕 